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01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 허성무·김문수·장철민

김동아 • 이강일 • 김정호

서미화 · 오세희 · 이언주

이수진 · 김한규 · 박지혜

김병주 의원(13인)

제안이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조선, 기계·자동차, 항공우주 등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 함으로써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산업 규모와 잠재력에 걸맞는 과학 기술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경상남도에 본원을 두고 부산에 분원을 두 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 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 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 자.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안 제31조).
-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조치를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 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산업계와의 합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 립한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본원·분원 및 부설기관)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본원을 경상 남도에 두고, 분원을 부산에 둔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및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본원 · 분원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 5.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사장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⑦ 감사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이사회)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총장)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 제9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경 남부산과학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익사업)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경남부산과학기 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 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창업지원)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원·직원 및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

다.

- 제14조(사업연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 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제16조(지원·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17조(학위과정 등)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
- 제18조(평의원회)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분원 및 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교원 · 직원 · 연구원 · 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4.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 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평의원회 심의 결과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교원 및 연구원)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 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 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

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을 제시하는 등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교원의 임면)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제26조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②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 여야 한다.

- ⑥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연구·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25조(학생)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 제27조(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8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9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30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 제31조(기금의 설치 등)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 연구 시설의 설치 운영

-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기부 등)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 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경남부산과학기술원과 이를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 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4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5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경남부산과학기술원 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 과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검직 발령할 수 있다.
-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민법」의 준용) 경남부산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과태료)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남부산과학기술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사람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경남부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의 이사·감사 및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후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의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